

『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의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증지 사용폐지 및 수수료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
- 전자인증요금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「구미시 수입증지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
-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
 - 증지의 규격 및 모양(안 제4조)
 -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지정, 수입금 일일결산, 결산자료 3년간 보존(안 제6조)
 - 수입금을 전자화폐,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가능토록 규정(안 제7조)
 - 수입증지의 환매 청구는 가능토록 규정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, 「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행정자치부의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해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증지의 발행, 판매인 지정, 취소,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, 증지 취급, 판매인 수수료, 증지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
-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
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수수료 납부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 제고,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현금처럼 취급해 온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사용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[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]

제4조(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)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.

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·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(亡失)되거나 훼손(毀損)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·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.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09.3.25.]

제5조(변상금액의 감면) 감사원은 「감사원법」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, 손해발생의 원인,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,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[전문개정 2009.3.25.]

제6조(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.

1. 중앙관서의 장(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2. 지방자치단체의 장

3. 감독기관(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장

4. 해당 기관(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장

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·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
[전문개정 2009.3.25.]

제7조(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)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감

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3.25.]

[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수입증지”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상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.

② “수입증지 요금계기”(이하 “계기”라 한다)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) 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1.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
2. 축산물, 소방시설, 위험물 안전검사 수수료
3.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
4. 그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, 수수료 등

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,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증지의 규격 및 모양) 증지의 규격은 가로 2.7센티미터, 세로 3.0센티미터로 하고, 모양은 도의 심볼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.

제5조(계기의 사용) ① 도지사는 계기의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계기의 사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수입증지 요금
2. 발행 기관명
3. 발행 년월일
4. 계기 고유번호

③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용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관리책임자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임무) ① 도지사는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.

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“결손”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되, 이들 증빙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입금의 납입) 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금고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는 그 다음날까지,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,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은 정산기한 내에 도 금고에 납입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종이 수입증지 환매)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(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)는 별지 제2호

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변상책임)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